

1. 개정이유

현행 용량 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됨에 따라 자기가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력을 거래할 수 없는바, 전력거래에 한하여 재생에너지 일반용전기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함으로써,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은 전체 전력시장 참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력거래 수수료를 전제로 설계 및 운영 중인바, 계약시장 등 전력시장 및 전력거래 다변화를 반영하여 특정 전력시장 참여자에게 편익·효과가 귀속되는 개별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제4호)
- 나.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한 회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추가(안 제23조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23.~ 11. 2.)

3) 행정규제 : 규제없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한 회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 기설비로 한다. 1. 2.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 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 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 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 하인 발전설비(법 제31조를 적 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 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 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2. (생 략) <u><신 설></u>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 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 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2. (생 략) <u><신 설></u>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 비 재원)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u>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한 회 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수행하</u>

	<u>는 업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u> <u>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u>
--	--